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Mar 29, 2019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포함('19. 3. 4)

•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 월 결산법인의 2018 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함
 - ▷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상

- 12 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 개사에 대하여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현황(잠정치)

	주권상장법인			기타	총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202	755	1,298	149	446	2,648

• 주요 점검 항목

- 재무공시사항(40 개 항목)
 -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2 개 항목)

- ▷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11 개 항목)
 -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관련 2 개 항목 포함
- ▷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의 수집(7 개 항목)
- 비재무공시사항(7 개 항목)
 - ▷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현안(4 개 항목)
 - ▷ 특례상장 위험(1 개 항목)
 - ▷ 모범사례 이행실태(2 개 항목)

• **향후 추진계획**

- 5월 중 중간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도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중간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

금융위원회, 회계·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과제로 선정('19. 3. 7)

•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5대 신규과제**

- [과제 1]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과제 2]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
- [과제 3]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익 제고
- **[과제 4]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 기업 회계·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회계개혁 정착 및 감독 선진화)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을 통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제도(4.1 일 시행)를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25년, '16년)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
 -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적용방법 및 감독지침 제공을 확대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제재의 징벌력 및 순응도를 제고**
 - 과도한 감사보수나 외부용역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 대응
 - (공시정보의 충실성·적시성 제고)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요소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시제도를 개선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AICPA's National Conference 2018 – An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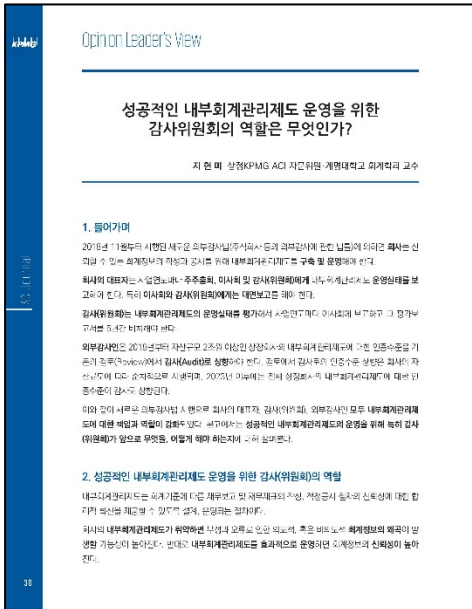
AICPA(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의 재무보고 관련 연례 컨퍼런스가 지난해 1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고품질의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를 주요 주제로 다루었는데,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보고서는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처] Global 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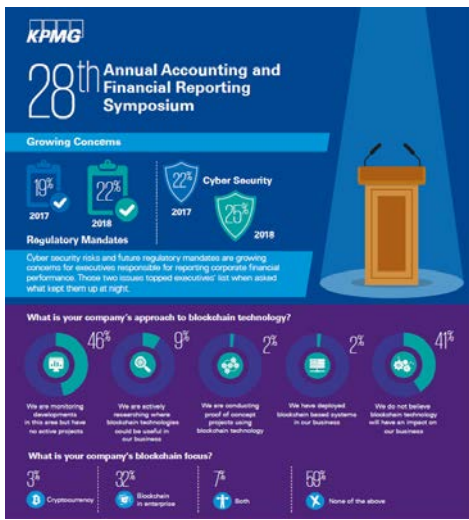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사의 대표자,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히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출처] 삼성 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본 보고서는 Global KPMG에서 2018년 11월 개최한 제28회 연례 회계 및 재무보고 심포지엄(Annu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mposium)에 참석한 575명의 재무보고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재무보고 담당 임원들은 우려하는 주요 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19%)를 꼽았으며, 그 외에 사이버보안(25%)와 법적 규제(22%) 등을 꼽았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설문항목은 첨부된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Global KPMG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한 범위 해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2.27)

Q.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조에 정의되어있는 “회사의 대표자등”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항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가?

A.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의 범위의 경우, ‘회사의 재무정보가 올바르게 작성되도록 전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이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전담팀원은 물론 회사의 대표자와 실제로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의 범위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는 바, 현재 당해 회사의 업무분장에 포함된 적용주체와 일치되게끔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1.28)

Q.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교육훈련계획,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해석함에 있어 성과평가는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을 의미하는가?

A. 해당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의 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으로 보아야 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시 감사위원회 동의 (한국상장사협의회, 2018.10.2)

Q.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新외부감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가?

A. 외부감사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하여 대표이사 지정절차 외에 감사위원회 임면 동의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작년 사업보고서, 新회계기준·외감법 내용 꼼꼼히 기재해야" [이데일리]
- 최종구 "회계·공시제도 개선해 공정 자본질서 확립" [조세금융신문]
- 상장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법 전문가 비중 증가 [세정신문]
- 회계사회,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 확정 [세정일보]
- 기업 외부감사 부담 줄인다...'비적정 상장폐지' 제도 개선 [연합뉴스]
- 대한항공 "내부회계통제그룹 신설...경영 투명성 확보" [SBS CNBC]
- 우리은행 부행장, "손익보다 리스크관리...내부 통제 강화" [더벨]

해외 동향

- SEC's Peirce supports reconsideration of SOX 404(b) [CW]
- Leases 2.0: Is your company ready for ongoing compliance? [CW]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성KPMG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13:30 ~ 17:00
- 장 소: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HL 층 하모니볼룸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13:30 ~ 14:00 [30 분]	등록 및 입장	
14:00 ~ 14:05 [05 분]	Opening Remarks	김교태 회장 (삼성 KPMG)

14:05 ~ 14:20 [15 분]	Session I - 축사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과 대응	이재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14:20 ~ 15:00 [40 분]	Session II - 개관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 변화와 고도화 현황	김유경 상무 (삼정 KPMG)
15:00 ~ 15:30 [30 분]	Session III - 핵심과제 1 급증하는 재무보고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나재광 이사 (삼정 KPMG)
15:30~15: 50 [20 분]	Coffee / Tea Break	
15:50 ~ 16:15 [25 분]	Session IV - 핵심과제 2 IT 통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중요성과 대응과제	신광근 상무 (삼정 KPMG)
16:15 ~ 16:40 [25 분]	Session V - 핵심과제 3 내부회계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 방향 재정립	허재훈 상무 (삼정 KPMG)
16:40 ~ 16:55 [15 분]	Q&A	All KPMG's Speakers
16:55 ~ 17:00 [5 분]	Closing Remarks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 (삼정 KPMG)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부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양승열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진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하균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변재준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철희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채민선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한기원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